



2021년도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식회사 이수화학

당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지배구조 관련 현황에 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현황은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 기재하였습니다. 보고서 내 지배구조 관련 활동내역의 경우 공시대상기간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가이드라인에서 별도 기간을 제시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 목차

I 개요 .....	3
II. 기업지배구조 현황 .....	5
1. 기업지배구조 정책.....	5
2. 주주.....	6
1) 주주의 권리.....	6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16
3. 이사회.....	26
3) 이사회 기능.....	26
4) 이사회 구성.....	31
5) 사외이사의 책임.....	39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43
7) 이사회 운영.....	44
8) 이사회 내 위원회.....	54
4. 감사기구.....	55
9) 내부감사기구.....	55
10) 외부감사인.....	63
5. 기타 주요 사항.....	68

## 첨부

- 이수화학 정관 (22.03.31 개정)
- 이수화학 2022 기업지배구조현장
- 이사회규정
- 공시정보관리규정
- Risk 관리규정
- 내부회계관리규정



□ 기업개요<sup>1)</sup>

최대주주등	(주) 이수 외 7명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28.18% <sup>2)</sup>
		소액주주 지분율	65.90% <sup>2)</sup>
업종(금융/비금융)	비금융	주요 제품	알킬벤젠, 노말파라핀 등
공정거래법상 기업 집단 해당여부 (해당/미해당)	해당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 여부 (해당/미해당)	미해당
기업집단명	이수		
요약 재무현황 (단위 : 억원)			
	2021 년 <sup>3)</sup>	2020 년 <sup>3)</sup>	2019 년 <sup>3)</sup>
연결 매출액	17,033	13,133	15,137
연결 영업이익	821	△368	66
연결 계속사업이익	965	△1,431	△236
연결 당기순이익	965	△1,431	△220
연결 자산총액	11,689	9,691	10,604
별도 자산총액	9,867	8,690	9,750

1)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2)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3) 가장 최근 시점 관련 사항을 도표 좌측부터 기재

## Ⅱ. 기업지배구조 현황

### 1. 기업지배구조 정책

#### 1)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당사는 '삶의 풍요와 편리를 더하는 아름다운 미래창조'라는 핵심목적과 '성실', '도전', '고객만족'이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 제고의 초석이 된다는 믿음으로 2022 기업지배구조 헌장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경영을 실현함으로써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 2) 지배구조 특징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당사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진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3명의 사내이사와 1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총수의 1/4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는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당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산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식견으로 이사회 내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 재경팀은 이사회 업무의 지원 역할을 하며, 이사회 개최 시 개별 안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주주

1) 주주의 권리

**(핵심원칙 1)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1-①) 기업은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가.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일시, 장소, 의안 등 주주총회 관련 정보 제공 전반에 관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정관 제18조제1항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총회일 2주간 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표 1-①-1에 기재하였고, 주주총회 15일 전 주주총회 안건 및 일시, 장소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 당사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주주 본인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18조제1항>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i)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 개최 내역 (표 1-①-1)

▷ (표 1-①-1)

구 분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제5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일	2022년 2월 25일	2021년 2월 25일	2020년 2월 27일
소집공고일	2022년 3월 16일	2021년 3월 11일	2020년 3월 12일
주주총회개최일	2022년 3월 31일	2021년 3월 26일	2020년 3월 27일
공고일과 주주총회일 사이 기간	주총 15일 전	주총 15일 전	주총 15일 전

개최장소/지역	더 컨벤션 4층 연회장 /서울	더 컨벤션 4층 연회장/ 서울	이수화학빌딩 B1F 강당 / 서울	
주주총회 관련사항 주주통보 방법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소집통지서 발송 -당사 홈페이지 공고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외국인 주주가 이해 가능한 수준의 소집 통지 여부 및 방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세 부 사 항	이사회 구성원 출석 여부	4명중 3명 출석	4명중 3명 출석	4명중 4명 출석
	감사 또는 감사 위원 출석여부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1명 중 1명 출석
	주주발언 주요 내용	1) 발언주주 : 2인 (개인주주 2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1) 발언주주 : 1인 (개인주주 1인) 2) 주요 발언 요지 :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 등

1) 가장 최근 시점 관련 사항을 도표 좌측부터 기재

※ 기타 기재사항 없음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주주총회 4주전 통지)에 주주에게 제공하였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재무제표 확정 등 내부 결산 일정에 맞추어 현재 주주총회 15일 전 주주에게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업무 일정을 단축시켜 현재보다 빠른 시일에 주주총회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②)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의 직접 또는 간접 의결권 행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결산 및 감사 일정에 따라 주주총회 개최일을 확정하였고, 최근 3년간 집중일에 해당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주주총회 개최 내역은 표 1-②-1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는 도입하고 있지 않지만, 2022년 3월 31일에 개최한 제54기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및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제54기 정기주주총회를 포함한 공시기간 내 실시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세부 현황은 표 1-②-2에 기재하였습니다.

(i)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의 날에 개최하였는지 여부 등(표 1-②-1)

▷ (표 1-②-1)

구 분	제54기 주주총회 (2022년)	제53기 주주총회 (2021년)	제52기 주주총회 (2020년)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2022.03.25, 2022.03.30, 2022.03.31	2021.03.26 2021.03.30 2021.03.31	2020.03.13 2020.03.20 2020.03.26 2020.03.27
정기주주총회일	2022.03.31	2021.03.26	2020.03.27
정기주주총회 집중일 회피 여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서면투표 실시여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자투표 실시여부	예	아니요	아니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여부	예	아니요	아니요

(ii) 서면투표·전자투표 도입 여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현황 등

(iii)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최된 주주총회의 안건 별



찬반비율, 구체적 표결결과 내역 등(표 1-②-2)

▷ (표 1-②-2) (기간 내 주주총회가 1회 이상일 경우 동일한 양식의 별도의 표로 기재)

정기		제54기 주주총회			2022.03.31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 (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sup>1)</sup>	보통	제54기 (2021.01.01~202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27,205,956	-	- - - -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27,205,956	11,254,599	10,793,383 (95.90%) 461,216 (4.10%)	
제3호 의안	제3-1호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임태기)	가결	27,205,956	11,254,599	10,762,755 (95.63%) 491,844 (4.37%)
	제3-2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	가결	27,205,956	11,254,599	10,760,760

	호		동민)				(95.61%)
							493,839
							(4.39%)
제4호 의안	보통	감사 선임의 건 (정태환)	가결	20,143,290	4,197,394	3,719,190	(88.61%)
						478,204	(11.39%)
제5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7,205,956	11,254,599	10,549,565	(93.74%)
						705,034	(6.26%)
제6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7,205,956	11,254,599	10,766,642	(95.66%)
						487,957	(4.34%)

주1)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1호 의안은 2022년 3월 23일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어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기	제53기 주주총회			2021.03.26		
안건	결의 구분	회의 목적사항	가결 여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①)	① 중 의결권 행사 주식수(A)	찬성 주식수 (B) (비율, %)

						반대·기권 등 주식수(C) (비율, %)	
제1호 의안 <sup>1)</sup>	보통	제53기 (2020.01.01~2020.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 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23,561,429	-	-	
						-	
						-	
						-	
제2호 의안	제2-1 호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학봉)	가결	23,561,429	8,675,853	7,923,912
							(91.33%)
							751,941
							(8.67%)
	제2-2 호	보통	사내이사 선임의 건 (오인철)	가결	23,561,429	8,675,853	8,299,448
							(95.66%)
							376,405
							(4.34%)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3,561,429	8,675,853	8,291,944	
						(95.57%)	
						383,909	
						(4.43%)	
제4호 의안	보통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23,561,429	8,675,853	8,675,853	
						(100.00%)	

						0
						(0.00%)

주1)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제39조제4항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적정의견 및 감사 전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여, 정기주주총회 의결사항 제1호 의안은 2021년 3월 18일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어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에 주주가 최대한 참여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였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현재 서면투표제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실시한 제54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피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결산 및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집중(예상)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해당 사유는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를 통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1-③) 기업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의안을 용이하게 제안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 의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주주제안권과 관련한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현재 주주제안권 관련하여 별도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고 있지 않지만 상법 제363조의 2에 근거하여 당사의 주주는 직전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대응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당사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 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을 수신한 경우는 없었으며, 주주제안을 통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에 주주제안 관련 별도의 이행상황은 기재 생략하였습니다.

- (i) 주주제안 절차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
- (ii) 주주가 제안한 의안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iii)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제안 내역 및 이행

상황(안건 관련 주주총회 찬반비율 명기)(표 1-③-1)

▷ (표 1-③-1)

※ 주주제안을 통해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iv)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의 주요 내용 및 처리현황(표 1-③-2)

▷ (표 1-③-2)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활동의 일환으로 제출된 공개서한은 없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제안권을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 주주의 권리가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보다 용이한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 관련 절차를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별도 공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세부원칙 1-④) 기업은 배당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을 마련하고 이를 주주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 주주환원정책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의 배당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주주이익 극대화를 전제로 하여 회사이익의 일정부분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요수단으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배당에 관한 정책은 정관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배당 규모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투자 및 당해 이익, 현금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고 있고, 공시대상 기준 최근 3년간 매년 배당을 실시하였습니다. 당해 결정된 배당에 대한 상세 정보는 주주들에게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및 배당금 지급 통지서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배당정책은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주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41조>

**제41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제 41 조의 1 (중간배당)

① 회사는 각 영업연도 중 1 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등 관련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중간배당의 구체적인 방법·한도 등에 대해서는 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제 41 조의 2 (배당금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 1 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i) 배당을 포함한 기업의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ii) 주주환원정책 등을 주주에게 안내하는 방식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주주환원정책의 수립 등에 대한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는 최근 5년간의 배당 내역을 공시하고 있고, 향후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해 당사가 보유한 배당정책 또한 게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1-⑤) 주주환원정책 및 향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적절한 수준의 배당 등을 받을 주주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가. 주주환원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최근 3개년 동안 기말 기준 현금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1-⑤-1에 기재하였습니다. 공시기간 내 차등배당·분기배당 등 중간배당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주주환원 현황(표 1-⑤-1)

▷ (표 1-⑤-1) (주, 원, 억원, %)

사업 연도	결산 월	주식 종류	주식 배당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 <sup>1)</sup>	총 배당금	시가 배당률 <sup>2)</sup>	배당성향 <sup>3)</sup>	
							연결 기준	개별 기준
2021년	12	보통주	-	500	13,602,978,000	3.4	14.5	35.1
2020년	12	보통주	-	300	7,068,428,700	2.3	-	-
2019년	12	보통주	-	400	5,809,764,800	3.7	-	-

1) 1주당 연도별 지급액 총액

2) 주주명부 폐쇄일 2매매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거래소 시장에서 형성된 최종가격의 산술 평균가격에 대한 1주당 배당금의 비율

3) 배당금총액 / 연결 또는 개별 당기순이익

※ 2020년, 2019년 연결 및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여 배당성향 계산 불가

(ii) 최근 3개 사업연도별 차등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실시여부 및 내역(차등배당내역, 이사회 결정일, 주당배당금, 총배당금 등)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당 등 적절한 수준의 주주환원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배당가능한 이익 범위 내에서 회사의 당해 손익규모 및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 자원 확보, 재무 구조의 안정성 개선 등 다양한 요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의 배당정책에 따라 배당을 결정하고 있으며, 공시기간 기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의 권리를 존중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배당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신사업을 발굴하고 핵심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구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핵심원칙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세부원칙 2-④) 기업은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 작성기준일 현재 주식발행 정보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결과를 기준일을 명시하여 별도로 기재한다

당사의 총 발행 가능 주식수는 50,000,000주이며, 모두 보통주입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표 2-①-1에 기재하였습니다. 현재 발행한 종류주식은 없고, 별도 내용 기재는 생략하였습니다.

(i) 발행가능 주식 현황, 기 발행주식 현황, 발행된 종류주식 현황(표 2-①-1)

▷ (표 2-①-1) 주식발행 현황

구분	발행가능주식수(주) <sup>1)</sup>	발행주식수(주) <sup>2)</sup>	발행비율 <sup>3)</sup>	비고
보통주	50,000,000	27,959,544	55.92	

1) 기준일 현재 수권주식수(정관상의 주식수)

2) 기준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기준일 현재까지 감소(감자, 이익소각 등)한 주식의 총수

3) 발행주식수/발행가능주식수 \* 100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기재사항 없음

(ii) 종류주식별 의결권 부여내용 및 사유, 종류주주총회 실시내역 등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이 부여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정관 제23조에 따라 모든 주주에게 1주당 1의결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주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상법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공평한 의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3조>

**제23조(주주의 의결권 행사)**

- ①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총회 개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주가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다.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와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정보를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매분기 결산이 이루어진 후 연간 및 분기 실적발표 자료를 국문으로 홈페이지/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IR 행사를 진행하여 당사의 사업 현황, 관련 시장 동향, 향후 투자 및 중장기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 2-①-2에 기재하였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대표번호를 공개하여 해당 번호로 IR 관련 문의가 올 경우 담당 팀으로 연결하고 있고, 별도로 IR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당사는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를 운영 또는 관련정보를 영문으로 공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시기간 내 공정공시 내역은 표 2-①-4에 별도 기재하였고, 공시기간 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i) 주요 IR, 컨퍼런스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등 일부 주주와의 대화 등 개최 내역(일정, 대상, 주요 내용 등)(표 2-①-2)

▷ (표 2-①-2)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요 IR, 컨퍼런스콜, 주주와의 대화(소액주주와의 대화를 구분하여 기재) 개최 내역

일자	대상	형식	주요 내용	비고
2021.05.20 ~ 2021.05.24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소개 및 실적 리뷰	-

2021.08.19 ~ 2021.08.20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소개 및 실적 리뷰	-
2021.09.01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회사소개 및 실적 리뷰	-
2021.09.29	국내 기관투자자	Corporate Day	회사소개 및 실적 리뷰	-
2021.11.16 ~ 2021.11.18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소개 및 실적 리뷰	-
2022.05.18 ~ 2022.05.20	국내 기관투자자	NDR	회사소개 및 실적 리뷰	-

※ 기타 기재사항 없음

(ii)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IR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모두를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iii) 외국인 주주를 위한 영문 사이트 운영, 담당자 연락처 공개 여부 및 영문 공시 내역(표 2-①-3)

▷ (표 2-①-3)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영문공시 내역

(기업이 직접 작성하여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하여 제출한 영문공시)

※ 공시대상기간 중 영문공시 내역은 없습니다.

(iv) 공정공시 내역(표 2-①-4 활용)

▷ (표 2-①-4)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공정공시 내역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이용하여 제출한 공정공시)

공시일자	공시제목	주요 내용
2021.08.04	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1년 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2021.08.04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정공시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1년 반기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잠정실적

	정)실적(공정공시)	익 등 잠정실적
※ 기타 기재사항 없음		

(v)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지정 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노력 등(표 2-①-5)

▷ (표 2-①-5)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및 그 내역 등

※ 공시대상기간 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라.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공정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기업정보에 대해 전자공시시스템 및 IR 활동을 통해 충분한 내용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문 및 영문 홈페이지에 IR 담당부서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주주를 위해 영문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영문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외국인 주주를 위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2-②) 기업은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가.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한 기업의 통제 장치(정책)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러한 장치를 마련·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당사는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가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정책을 갖추기 위해 정관 제30조제4항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가 아닌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관련 정책 마련 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공시기간 내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별도 기재했습니다.

<정관 제30조제4항>

**제30조(이사회)**

④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당사 2021년 사업보고서 중 X.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1.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용**

**가. 채무보증 내역**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

(단위:백만원)							
구 분	구 분	제공받은회사	채무보증금액			건 수	제공내역
			기초	증감	당기말		
(주)이수 화학	종속기업	ISU Chemical Germany GmbH	4,818	(1,596)	3,222	1	포괄수출금융
		이수건설(주)	107,131	(43,732)	63,399	10	일반대출 외
		신장이수통근농업개발유한공사	4,007	240	4,247	2	운전자금대출
		에스와이제이(유)	4,730	(4,730)	-	-	전자단기사채
		광화문제이차(주) (주)	6,380	10,010	16,390	3	전자단기사채
		와이비제이(유) (주)	14,267	(14,267)	-	-	ABL 유동화
		원케이디제삼차(주) (주)	-	6,914	6,914	1	ABL 유동화
		에이치티제이(주) (주)	9,450	(9,450)	-	-	ABL 유동화
		아이에이치제이(주) (주)	-	9,369	9,369	1	ABL 유동화
	공동지배기업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87,879	(9,835)	78,044	5	시설자금대출 외
	기타 특수관계자	(주)이수엑사캠	25,383	(3,783)	21,600	3	구매자금대출 외

(단위:백만원)							
구 분	구 분	제공받은회사	채무보증금액			건 수	제공내역
			기초	증감	당기말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1,250	955	2,205	1	이자지급보증
			5,250	(5,250)	-	-	채무인수약정
합 계			270,545	(65,155)	205,390	27	

그 밖에 지배기업은 우리은행과 반포사옥에 대하여 이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8 호를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탁자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기업은 당기 중 본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을 3 년 추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관련하여 (주)이수, (주)이수페타시스, (주)이수액사캠, (주)이수시스템, 이수건설(주)가 임차인으로서 부담하는 임대료 등에 대해 당기말 현재 9 년간 총 33,908 백만원의 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이해관계자와의 출자 및 출자지분 처분내역 등의 거래내용은 'IX. 계열회사 등의 사항'의 '2. 타법인출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거래내용	당 기	전 기
(주)이수화학	지배기업	(주)이수	매입 등	7,465,967	9,657,169
			기타수익	217,964	413,827
	관계기업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8 호	매입 등	1,125,698	1,056,622
	공동기업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매출	7,143,194	20,537,803
매입 등			33,150,701	26,113,198	

	기타특수관계자	(주)이수엑사캠	매출	135,893,762	98,387,903
			기타수익	187,781	1,093,337
			매입 등	39,000	70,848
		(주)이수시스템	매입 등	2,209,019	2,617,633
			유·무형자산 구입	1,258,881	459,964
			기타수익	193,494	341,094
		(주)이수페타시스	기타수익	230,982	345,834
		(주)이수에이엠씨	매출	6,000	6,000
매입 등	4,079,952		5,371,261		
(주)이수엠플지스	지배기업	(주)이수	매입 등	454,718	392,231
	기타특수관계자	(주)이수시스템	매입 등	544,501	318,313
			유·무형자산 구입	42,081	31,103
이수건설(주)	지배기업	(주)이수	매입 등	3,838,265	3,057,352
			유·무형자산 구입	1,391	-
	관계기업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8 호	매입 등	1,012,206	983,210
	기타특수관계자	(주)이수시스템	매입 등	1,158,856	1,774,456
			유·무형자산 구입	103,830	33,217
		(주)이수에이엠씨	매입 등	1,831,100	1,962,119
			기타수익	50,000	-

		(주)이수엑사캠	매입 등	-	25,700
(주)한가람포닉스	기타특수관계자	(주)이수시스템	매출	-	10,000
			매입 등	53,000	-
			유·무형 자산 구입	240,000	1,850
신장이수룡균 농업개발유한공사	기타특수관계자	신장이리용곤농림개발유한공사	매출	5,148	-
			매입 등	34,983	-
합 계			매출	143,048,104	118,941,706
			매입 등	56,997,966	53,400,112
			기타수익	880,221	2,194,092
			유·무형 자산 구입	1,646,183	526,134

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 분	특수관계자명	매출채 권	대여금	기타채 권	매입채 무	기타채 무
(주)이수화학	지배기업	(주)이수	-	-	23,100	-	381,047
	공동기업	GOC(Taicang)	2,350,079	-	-	3,851,490	-
	기타특수관계자	(주)이수엑사캠	16,232,065	-	41,926	-	21,450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 분	특수관계자명	매출채 권	대여금	기타채 권	매입채 무	기타채 무
		(주)이수시스템	-	-	20,552	-	356,713
		(주)이수페타시스	-	-	30,404	-	-
		(주)이수에이엠씨	-	-	-	-	373,373
		임직원가계대출	-	1,632,378	-	-	-
(주)이수엠피지스	지배기업	(주)이수	-	-	-	-	55,129
	기타특수관 계자	(주)이수시스템	-	-	-	-	63,425
		임직원가계대출	-	360,586	-	-	-
이수건설(주)	지배기업	(주)이수	-	-	-	343,731	-
	기타특수관 계자	(주)이수시스템	-	-	-	43,699	-
		(주)이수에이엠씨	11,000	-	50,000	194,150	-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	3,489,200	-	-	-
신장이수룡쿤 농업개발유한 공사	기타특수관 계자	신장이리용곤농림개발유 한공사	-	-	9,484	-	3,911
			18,593,144	5,482,164	175,466	4,433,070	1,255,048

마.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특수관계구 분	특수관계자명	자금 대여	자금 회수	배당금 수취	현금 출자	출자 회수
㈜이수화 학	관계기업	브이아이씨네큐전문투자형사모특 별자산투자신탁	-	-	-	-	821,7 02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24 8 호	-	-	9,447, 671	-	-
	기타특수관 계자	ISU- 힘내라경북애그리푸드투자조합	-	-	-	437,5 00	-
	기타특수관 계자	IBK-ISU 문화콘텐츠투자조합	-	-	-	-	150,0 00
	기타특수관 계자	ISU-AJ 스포츠투자조합	-	-	-	300,0 00	-
	기타특수관 계자	임직원가계대출	510,00 0	208,40 3	-	-	-
이수건설 (주)	기타특수관 계자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3,489, 200	-	-	-	-
(주)이수업 지스	기타특수관 계자	임직원가계대출	-	1,139, 252	-	-	-
합 계			3,999, 200	1,347, 655	9,447, 671	737,5 00	971,7 02

(i)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정책)

(ii) 계열기업 등과의 내부거래,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 등과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포괄적 이사회 의결\*이 있다면 그 내용과 사유

\* 법령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결의가 필요한 거래에 대하여 기간·한도 등의 범위를 정하여 다수의 거래를 포괄적으로 승인하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말함

(iii) 지배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다(정기보고서 등의 이해 관계자와의 거래내 용에 준하여 기재)

**(세부원칙 2-③)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 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 호를 위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현재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물적분 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에 대한 소액주주 의견 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 주보호를 위한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주주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나.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 수도, 분할(물적분할 포함),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이 있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 우,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다.

공시 대상연도 내에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합병, 영업양수도, 분 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은 없었습니다.

### 3. 이사회

#### 3) 이사회 기능

**(핵심원칙 3) 이사회 기능**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 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3-①)**

이사회는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 등 관련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기업운영의 중심으로서 이사회가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정관 제5장에 이사의 선임 및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이사회 규정을 마련하여 이사회 부의사항의 세부항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규정 제7조에서 정한 이사회 부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7. 부의사항

### 7.1 이사회 부의할 사항

#### 7.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 (3) 영업보고서의 승인
  -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5) 정관의 변경
- (6) 자본의 감소
- (7)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11)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3)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정관에 의해 상법 제 449 조의 2 제 1 항 단서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 (14)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 감사의 보수
- (16) 법정준비금의 감액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 할 의안

#### 7.1.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5)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8) 인사, 노무에 관한 중요사항
- (9)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10)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11) 지점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12)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13)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7.1.3 재무에 관한 사항**

- (1) 투자에 관한 사항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결손의 처분
- (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 (6) 신주의 발행
- (7)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8) 준비금의 자본전입
- (9) 전환사채의 발행
- (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1)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 (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4) 자기주식의 소각

**7.1.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 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회사의 임원 겸임

**7.1.5 기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2 이사회 보고할 사항**

**7.2.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위 이사회 부의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에, 7.1.2에 따라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부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고, 기타 항목에서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이사회 부의를 거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하게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시기간 내 관련 사항으로 이사회 부의하여 심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당사 이사회의 권한 중 '사채의 발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은 이사회 규정 7.1.3.(7)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i)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ii)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중 관련 법상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사항의 존재 여부(심의·의결사항의 자율적 추가 또는 기준금액 강화 등), 주요 내용 및 효과

(iii) 이사회의 권한 중 이사회 내 위원회 및 대표이사(또는 대표집행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의 이사회는 관련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해진 절차를 통해 심의, 의결하고 있고 회사의 경영진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3-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과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정관 제32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에 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33조제2항에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최고경영자 관련 별도의 승계정책이나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최고경영자 후보로 해당 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명확한 중장기적 비전과 경영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2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및 부사장에 보할 수 있으며, 이사 중에서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직무)**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i)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영 주체

(ii) 후보(집단) 선정, 관리, 교육 등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

(iii) 공시대상기간동안 교육 현황

※ (i)~(iii)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문서화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만 당해 세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단순히 유고 시 직무대행 순서만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승계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세부원칙 3-③) 이사회는 내부통제정책(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야 한다.**

가.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내부통제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리스크관리

당사는 회사경영활동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결정하여 관리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위험요소를 최소화시켜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경영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Risk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8.01 신설하였고, 실제 운영 후 미흡하거나 현황에 맞지 않는 항목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19.07에 1차례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당사는 리스크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리스크 관리 기준 및 계획 수립, 리스크 파악과 평가에 대한 정의와 업무분장을 기재하였고, 각 리스크의 의미, 관리 및 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준법경영

당사는 2003년 윤리경영헌장 규정을 제정하여 임직원은 물론 당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

및 당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해외법인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 산하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접수, 감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사례의 발생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내부고발제도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모든 임직원과 협력회사는 준법 및 윤리규범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법경영을 위한 법률팀이나 준법 관련 규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보완하기 위하여 준법경영을 포함한 내부 컴플라이언스 업무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개선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3) 내부회계관리

당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2년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있습니다.

### 4) 공시정보관리

당사는 회사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완전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2009년에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공시정보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책임자를 두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

※ (i) 및 (ii)에서 제시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문서화하여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만 당해 세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 4) 이사회 구성

#### (핵심원칙 4) 이사회 구성

▪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4-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가. 이사회 구성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 제382조, 상법 제542조의8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정관 제26조제1항에 따라 3명 이상 8명 이내의 이사를 두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 제30조제1항에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6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26조(이사의 수와 선임)**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가 이사 총수의 4분의1 미만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총수의 4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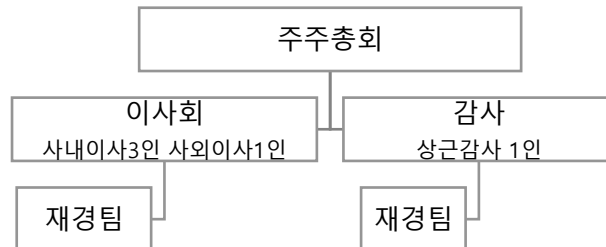
보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1명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세한 구성 현황은 표 4-①-2에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대표이사(CEO)와 이사회 의장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선임 사외이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사외이사 1인은 상법 및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0년 최초 선임하였고 임기는 3년입니다.

당사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i)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지원부서(인원 구성 포함) 등 관련 조직도(표 4-①-1)

▷ (표 4-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관련 조직도



※ 당사의 이사회와 감사는 별도의 지원조직을 두고 있지 않지만, 재경팀에서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 조직도에 기재하였습니다.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이사회 구성원의 연령, 성비 현황 등 (표 4-①-2)

▷ (표 4-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만나이)	직책	선임 일 <sup>1)</sup>	임기만료예정일	전문분야	주요경력
사내이사	류승호	남 (59세)	이사회 의장	2014. 03.21	2023.03.27	경영 총괄	이수애플리스(주) 대표이사 (주)이수화학 공장장 (현) (주)이수화학 대표이사
사내이사	임태기	남 (50세)	관리 본부장	2022. 03.31	2025.03.31	관리본부 총괄	(주)이수HR.브랜드 담당 임원 (주)이수 관리담당 임원 (현) (주)이수화학 관리본 부장
사내이사	김동민	남 (52세)	안전생 산본부 장	2022. 03.31	2025.03.31	안전생산 본부총괄	(주)이수화학 기술담당 임원 (주)이수화학 온산공장장 (현) (주)이수화학 안전생 산본부장
사외이사	허건수	남 (62세)		2020. 03.27	2023.03.27	경영자문	(현) 한양대 미래자동차 공학과 교수 (현) (주)이수화학 사외이 사

1) 재선임의 경우 최초 선임일 기재

※ 기타 기재사항 없음

(i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구성, 의장 및 위원장, 위원회의 주요 역할 등(표 4-①-3)

※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iv) 사외이사와 관련하여 사외이사수, 비율, 연임 현황 등을 설명

(v)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여부, 미분리 시 선임(先任)사외이사를 별도로 선임하는지 여부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구성되었는지,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지 설명하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당사의 정관 제26조제2항에 의거,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 후보를 선정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 선임 시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폭넓은 경험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경우 균형 있는 의사결정 및 경영감독이 가능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및 전문분야를 고려한 후, 상법 및 상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제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지를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사의 이사회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상법 제542조의8에 따라 이사 총수 4인 중 1/4 이상인 1인을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26조제2항>

**제26조(이사의 수와 선임)**

②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 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

**(세부원칙 4-②)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 및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현황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을 위해 사내이사의 경우 전문성과 비전, 리더십 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하고 있으며, 공정한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 상법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요건 등을 충실하게 점검하고, 다방면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책임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정관 제26조에 의해 이사의 선임에 대한 절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기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 이사회 현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표 4-②-1에 기재하였습니다.

(i) 이사회 전문성, 책임성 및 다양성(여성 이사 선임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정책의 마련 여부 및 이사회 구성원별 구체적 현황

(ii)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표 4-②-1)

▷ (표 4-②-1) 공시대상기간 직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 선임 및 변동 내역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예정)일	변동일	변동사유 <sup>1)</sup>	현재 재직 여부
사내 이사	류승호	2014.03.21	2023.03.27	2020.03.27	재선임	재직
	박종익	2017.03.24	2021.03.26	2021.03.26	사임	퇴직
	김학봉	2018.03.23	2022.03.31	2022.03.31	사임	퇴직
	오인철	2021.03.26	2022.03.31	2022.03.31	사임	퇴직
	임태기	2022.03.31	2025.03.31	2022.03.31	신규선임	재직
	김동민	2022.03.31	2025.03.31	2022.03.31	신규선임	재직
사외 이사	허건수	2020.03.27	2023.03.27	2020.03.27	신규선임	재직

1) 변동사유란에는 사임, 해임, 임기만료, 신규선임, 재선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기타 기재사항 없음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다양한 배경,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 중 사내이사는 총 3인으로 업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

표이사인 류승호 사내이사는 이수화학 사장으로 경영총괄 업무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하였고, (주)이수앱지스 대표이사 및 (주)이수화학 공장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임태기 사내이사는 (주)이수 HR.브랜드 담당임원 및 (주)이수 관리담당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관리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또한 김동민 사내이사는 (주)이수화학의 기획 담당임원, 온산공장장, 기술 담당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안전생산본부를 총괄하는 본부장으로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임 중인 허건수 사외이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현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어 당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래 산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로서 경영자문을 통해 이수화학의 투명경영을 재고하는 등 이사회 전문성 강화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③)**

**이사 후보 추천 및 선임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지 여부, 동 위원회의 구성 현황(사외이사 비율 포함) 및 활동 내역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별도의 이사회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주주에게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고 있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선임시 주주총회 사전에 이사에 대해 추천인과 최대 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외부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시대상기간 내 실시한 주주총회 15일 전 후보자의 주요한 정보 및 관련 법령 및 규범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정기보고서로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4-③-1에 기재하였습니다.

재선임을 포함한 이사 후보의 경우 매분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VI.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내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모든 이사의 선임 배경, 활동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주들이 이사 선임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에 이사선임 안건이 포함될 경우 후보 관련정보를 충분히, 주주가 검토하기에 충분한 시간 전에 제공하는지 여부(표 4-③-1)

▷ (표 4-③-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주주총회시 이

사 후보에 관한 정보제공 내역

정보제공일	주주총회일	이사 후보		정보제공 내역	비고
		구분	성명		
2021.03.11 (주총15일전)	2021.03.26	사내	김학봉	1.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 여부/최대주주의와의 관계/추천 인/체납사실 여부(최근 5년이 내)/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최 근 5년이내)/법령상 결격사유 유 무  2. 후보자 주된 직업/주요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재선임
		사내	오인철		신규선임
2022.03.16 (주총15일전)	2022.03.31	사내	임태기		신규선임
		사내	김동민		신규선임
※ 기타 기재사항 없음					

(ii) 재선임되는 이사 후보(사내이사 포함)의 경우 과거 이사회 활동 내역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방법과 내용(사업보고서 기재와 기타 방법 구분)

**다.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기재하고 이사 후보 선정과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당사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지만, 2022년 3월에 실시한 제54기 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제와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등을 통해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충분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현재 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이사 선임을 위한 별도의 규정이나 기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의 이사는 관계법령 및 내부 규범에서 요구하는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이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력과 전문성이 있는지,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타의 이해관계가 없는지 등을 검증하여 이사후보를 추천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선임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4-④)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임원 현황(미등기 임원 포함)을 설명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총 14명으로 등기임원 5명, 미등기임원 9명으로 세부현황은 표 4-④-1에 기재하였습니다.

▷ (표 4-④-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현황(미등기 임원 포함)

성명	성별	직위	등기임원여부	상근여부	담당업무
김상범	남	회장	미등기	상근	회장
류승호	남	부사장	사내이사	상근	대표이사 사장
임태기	남	전무	사내이사	상근	관리본부장
김동민	남	상무	사내이사	상근	안전생산본부장
허건수	남	사외이사	사외이사	비상근	사외이사
정태환	남	감사	감사	상근	감사
이경수	남	전무	미등기	상근	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창국	남	전무	미등기	상근	연구개발본부장
이환일	남	상무	미등기	상근	프로젝트담당임원
주봉진	남	상무	미등기	상근	사업기획본부장
최수현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온산공장장
노기성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인사총무담당임원

김성우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울산공장장
박승철	남	상무보	미등기	상근	영업본부장

**나.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나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지 않지만, 당사의 임원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선임하고 있으며, 업무 경력 및 전문성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고려하여 선임하고 있습니다.

**다.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한다. 만일 선임되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가 있는 경우 특정인의 성명 등은 기재 생략)**

현재 당사의 임원 중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해당 혐의가 있는 자는 없습니다.

**라. 집행임원제도 도입여부 및 도입한 경우 그 배경 및 이유, 관련규정, 운영현황 등을 설명한다.**

당사는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그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러한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견제가 가능하게끔 기능하고 있고 별도로 집행임원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 5) 사외이사의 책임

##### (핵심원칙 5) 사외이사의 책임

▪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원칙 5-①) 사외이사는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해당 기업간의 이해관계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2020년 3월 27일에 최초 선임하였고, 임기는 3년입니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과거 당사 또는 계열회사에 재직한 경력이 없으며, 당사 또는 계열회사와의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사외이사 선정 시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나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i) 사외이사가 과거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표5-①-1)

▷ (표 5-①-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와 기업·계열회사 등과의 관계

성명	사외이사가 과거 당사·계열회사에 재직한 내용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당사·계열회사의 거래내역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당사	당사의 계열회사
허건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기타 기재사항 없음						

(ii) 사외이사(또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최근3개 사업연도)

(iii) 사외이사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해당 기업(계열회사 포함)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그 내역

(iv) 기업이 상기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및 관련 내부규정 등

나.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각각의 재직기간(0년 0월)과 보고서 제출일 현재 6년(계열회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장기 재직 하고 있는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한다.(표5-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표 5-①-2에 기재하였고, 6년을 초과하여 장



기 재직하고 있는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 (표 5-①-2)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별 재직기간 및 6년(계열회사 포함 9년) 초과 장기 재직시 그 사유

성명	당사		계열회사 포함시	
	재직기간	6년 초과 시 그 사유	재직기간	9년 초과 시 그 사유
허건수	2020.03.27 ~ 현재 (2년 2개월)	해당없음	좌동	좌동
※ 기타 기재사항 없음				

다.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해당 기업과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여부 및 기업이 사외이사 선임 시 이해관계자가 없는 자를 선임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는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하여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및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들을 검토하여 결격 요건 검증 뿐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를 인터뷰하여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외이사 자격 요건 뿐만 아니라 전문성 및 당사 기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의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이해관계가 없고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5-②)**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항 전반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당사 기업경영의 의사결정에 대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이사 겸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별도의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은 표 5-②-1에 기재하였습니다.

(i) 사외이사의 타기업 겸직 허용 관련 내부 기준

(ii)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의 겸직 현황(표 5-②-1)

▷ (표 5-②-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겸직 현황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현직	겸직 현황			
				겸직기관 <sup>2)</sup>	겸직업무	겸직기관 재직기간	겸직기관 상장여부
허건수	2020.03.27	2023.03.27	한양대 미래자동차 공학과 교수	없음	-	-	-

1) 감사위원일 경우 성명 하단에 기재

2) 겸직기관은 비영리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을 포함

※ 기타 기재사항 없음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가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의 사외이사는 현직 공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다른 개별기업 또는 기관에 겸직하고 있지 않으며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5-③)**

**기업은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가.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하고 있는 정책 및 구체적 운영 현황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사외이사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정책은 없지만, 당사 재경팀에서 사외이사 지원역할을 하며 이사회 운영 및 안건 검토자료, 경영활동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사외이사에게 회사의 현황 및 영업활동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사외이사만의 회의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 및 인적·물적자원 제공 절차, 구체적 제공 현황

(ii) 사외이사의 정보제공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지정 여부 등

(iii)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와 별도로 사외이사들만 참여하는 정기·임시 회의 개최 여부와 그 내역(회의 일시, 주요 논의사항, 참석현황 등)(표 5-③-1) 단,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는 제외

▷ (표 5-③-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

※ 당사의 사외이사는 1인으로 사외이사만의 회의 개최 내역은 없습니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이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재경팀에서 사외이사 지원 업무를 하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내에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 등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정보나 자원을 제공하는 내부 절차나 지침을 마련하고 사외이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핵심원칙 6)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6-①) 사외이사의 평가는 개별실적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평가결과는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개별 실적에 근거하여 수행하는지, 평가결과는 재선임 여부에 반영되는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재선임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현재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해당 내용의 보완을 검토하겠습니다.

(i) 사외이사 평가 실시 여부 및 실시하는 경우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ii) 구체적 평가방법(예: 자기평가, 사외이사 상호평가, 직원평가, 외부평가 등) 및 관련 규정 등

※ 사외이사에 대한 실제 평가실시 내역을 기재하는 경우만 당해 세부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

**(세부원칙 6-②) 사외이사의 보수는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가. 사외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규정한 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이사보수 한도 금액 내에서 사외이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보수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나 산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 제29조>

**제29조(보수)**

-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 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결의한다.
-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i)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포함하는 보수 관련 정책의 내용과 해당정책의 수립배경, 구체적 보수 산정기준

(ii)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수량, 행사조건(성과 연동 여부 포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보수가 평가 결과,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주총에서 이사보수 한도 금액을 승인하고 있고, 별도의 사외이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임원에 준하는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7) 이사회 운영

**(핵심원칙 7) 이사회 운영**

▪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세부원칙 7-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이사회 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정관 제30조 (이사회) 및 별도의 이사회 운영규정을 두어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이사회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정관 제30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일정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공시대상기간 내 이사회 개최 내역은 표 7-①-1에 기재하였습니다.

<정관 제30조>

**제30조(이사회)**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사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⑤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⑥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i) 정기이사회 관련 규정 현황(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

(ii)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정기/임시 이사회 개최 내역 (표 7-①-1 활용)

(iii) 사전에 회의일정을 정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집을 통지하는지 여부 (안건통지일 명시) 등의 현황을 기재(표 7-①-1)

▷ (표 7-①-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이사회 개최 내역

회차	안건		가결여부	정기/임시	개최일자	안건통지일자	출석/정원
	구분	내용					
1	결의사항	(1) 차입금 조달의 건	가		2021.01.12	2021.01.11	4/4

차		(2) 이수건설(주) 사모사채 보증 입보의 건	결				
2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 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 건	가 결		2021.01.14	2021.01.13	4/4
3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의 제95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가 결		2021.01.22	2021.01.20	4/4
4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의 제96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가 결		2021.01.26	2021.01.25	4/4
5차	결의사항	(1)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 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 대보증의 건 (2) 이수건설(주)의 제97회 사모 사채 연대보증의 건	가 결		2021.02.10	2021.02.09	4/4
6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의 제98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가 결		2021.02.17	2021.02.16	4/4
7차	결의사항	(1) 이수건설(주)의 제99회 사모 사채 연대보증의 건 (2) 이수건설(주)의 제100회 사모 사채 연대보증의 건 (3) 제5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의 건	가 결		2021.02.25	2021.02.24	4/4
8차	결의사항	(주)이수엑사캠의 산업운영자금대 출 대환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 결		2021.03.02	2021.03.01	4/4
9차	결의사항	(1) 2021년 경영계획 및 종합예 산 편성의 건 (2)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연대보증) (3) 베트남사무소 폐쇄의 건	가 결		2021.03.09	2021.03.08	4/4

10 차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2)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보 고	2021.03.11	2021.03.10	4/4
	결의사항	(1) 제53기 별도 및 연결 결산 재무제표(안) 내부 승인의 건 (2) 제53기 배당금 지급에 관한 건 (3) 이수건설(주) 유상증자 참여 의 건	가 결			
11 차	결의사항	(1) 제53기 별도 및 연결 재무 제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에 대 한 연대보증의 건 (3) 기존 차입금 대환의 건	가 결	2021.03.18	2021.03.17	4/4
12 차	결의사항	(1) (주)이수애플리스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의 건 (2) (주)이수애플리스 전환사채 전환 청구의 건	가 결	2021.05.10	2021.05.09	4/4
13 차	결의사항	제58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 결	2021.06.18	2021.06.17	4/4
14 차	결의사항	(주)이수애플리스 전환사채 콜옵션 취득의 건	가 결	2021.06.28	2021.06.27	4/4
15 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 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 건	가 결	2021.07.14	2021.07.13	4/4
16 차	결의사항	(1) 단기차입금 대환의 건 (2) 대출약정 및 사모사채 지급 보증의 건 (합성2구역 대여채권	가 결	2021.07.27	2021.07.26	4/4

		담보대출)					
17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21.08.13	2021.08.12	4/4
18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21.09.15	2021.09.14	4/4
19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21.10.14	2021.10.13	4/4
20차	결의사항	(1) 이수건설(주)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2) 수출성장자금대출 조달의 건	가결		2021.10.22	2021.10.21	4/4
21차	결의사항	차입금 조달의 건	가결		2021.10.28	2021.10.27	4/4
22차	결의사항	(1) Great Orient Chemical (Taicang) Co., Ltd.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2)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차입에 대한 신용보강 승인의 건 (3)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보유 이수건설(주)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선약정 해지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		2021.11.29	2021.11.28	4/4
23차	결의사항	하나은행 차입한도 약정의 건	가결		2022.12.28	2022.12.27	4/4
1	결의사항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가		2022.01.14	2022.01.13	4/4



차		의 건	결				
2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22.02.11	2022.02.10	4/4
3차	결의사항	(1)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2) 제5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주)이수엑사캠의 산업운영자 금대출 대환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22.02.25	2022.02.24	4/4
4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22.03.11	2022.03.10	4/4
5차	결의사항	제53기 K-IFRS 적용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가결		2022.03.15	2022.03.14	4/4
6차	보고사항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2)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보고		2022.03.16.	2022.03.15	4/4
	결의사항	(1) 2022년 경영계획 및 종합예산 편성의 건 (2) 제 54기(2021.01.01~2021.12.31) 별도 및 연결 결산 재무제표(안) 내부 승인의 건 (3) 제 54기 배당금 지급의 건 (4) Great Orient Chemical (Taicang) Co., Ltd.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7차	결의사항	제54기(2021.1.1~ 2021.12.31) K-	가		2022.03.23	2022.03.22	4/4

차		IFRS 적용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결				
8차	결의사항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2022.04.14	2022.04.13	4/4
9차	결의사항	(1)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신한은행) (2)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우리은행)	가결		2022.04.20	2022.04.19	4/4
10차	결의사항	쿼드 COLABO Op.2 창업벤처전문 일반 사모투자신탁(가칭) 출자의 건	가결		2022.05.04	2022.05.03	4/4
11차	결의사항	기존 차입금 한도 증액의 건	가결		2022.05.26	2022.05.25	4/4
※ 기타 기재사항 없음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유 및 향후계획,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문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회계 운영실태 보고, 재무제표 승인, 배당금 지급, 경영계획 및 종합예산 편성, 정기주주총회 소집 등의 안건의 의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외에도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안건 발생 시마다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원칙 7-②)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안건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의사록, 녹취록을 상세하게 작성·보존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정관 제31조에 의거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 제11조에 이사회 의사록 관련 상세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관 제31조>

**제31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나.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재직했던(재직중인)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표 7-②-1 활용) 및 최근 3개 사업년도동안 재직한 개별이사의 최근 3개 사업년도별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표 7-②-2)을 기재한다. 주요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 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을 설명한다.

공시대상기간 개별이사의 이사회 출석내역과 안건 찬성률은 각각 표 7-②-1, 표 7-②-2에 기재하였습니다. 이사회 개최 시 토의내용과 결의내용은 개별 이사별로 기록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을 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 (표 7-②-1)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개별 이사의 출석 내역

회차	개최 일자	사외이사	사내이사					
		허건수	류승호	김학봉	박종익	오인철	임태기	김동민
1차	2021.01.12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2차	2021.01.14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3차	2021.01.22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4차	2021.01.26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5차	2021.02.10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6차	2021.02.17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7차	2021.02.25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8차	2021.03.02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9차	2021.03.09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10차	2021.03.11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11차	2021.03.18	출석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12차	2021.05.10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13차	2021.06.18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14차	2021.06.28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15차	2021.07.14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16차	2021.07.27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17차	2021.08.13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18차	2021.09.15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19차	2021.10.14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20차	2021.10.22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21차	2021.10.28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22차	2021.11.29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23차	2021.12.28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1차	2022.01.14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2차	2022.02.11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3차	2022.02.25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4차	2022.03.11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5차	2022.03.15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6차	2022.03.16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7차	2022.03.23	출석	출석	출석	미해당	출석	미해당	미해당
8차	2022.04.14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9차	2022.04.20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10차	2022.05.04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11차	2022.05.26	출석	출석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출석	출석

※ 기타 기재사항 없음

▷ (표 7-②-2) 최근 3개 사업년도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및 안건 찬성률

성명	구분	이사회 재직 기간	출석률(%)				찬성률(%)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sup>1)</sup>			최근 3개년 평균	최근 3개년		
				2021 (최근년도)	2020	2019		2021 (최근년도)	2020	2019
박원우	사외	2014.03.21~ 2020.03.27	100.0	-	100.0	100.0	100.0	-	100.0	100.0
허건수	사외	2020.03.27~ 현재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
류승호	사내	2014.03.21~ 현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김학봉	사내	2018.03.23~ 2022.03.3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박종익	사내	2017.03.24~ 2021.03.2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오인철	사내	2021.03.26~ 2022.03.31	100.0	100.0	-	-	100.0	100.0	-	-

1) 최근 3개년 중 해당 이사의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연도는 "-"으로 표시

※ 기타 기재사항 없음

8) 이사회 내 위원회

**(핵심원칙 8) 이사회 내 위원회**

▪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8-①) 이사회 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와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이사회추천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현황, 주요 역할, 구성 현황(세부원칙 4-①에서 기재한 경우 생략 가능)을 설명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열거된 모든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명확히 기재한 이후, 추가로 그 밖의 위원회 설치 사항을 기재

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과반수(감사위원회, 보상(보수)위원회는 전원)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였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원칙 8-②) 모든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권한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i) 위원회의 설치목적, 권한과 책임, 공시대상기간중 활동 및 성과평가, 구성 및 자격·임면 등

나. 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한다.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각 위원회별 공시대상기간 사업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 내역, 최근 3개 사업년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을 설명한다. (표8-②-1)(다만, 감사위원회 경우 세부원칙 9-②에서 기재)

당사는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 (표 8-②-1) 이사회내 위원회 개최 내역(감사위원회의 경우 표 9-②-1에서 작성)

※ 이사회 내 위원회 없음

#### 4. 감사기구

##### 9) 내부감사기구

###### (핵심원칙 9) 내부감사기구

▪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 (세부원칙 9-①)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 구성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 제542조10에 따라 현재 상근감사 1인을 두고 있으며,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른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구체적인 경력은 표 9-①-1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감사는 이사회의 견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 최다 채권은행으로부터 적격성 있는 후보자를 추천받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11조에 따르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당사 정관 및 규정에 감사의 겸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i) 내부감사기구 구성·선임 현황, 회계·재무 또는 감사전문가 현황(관련 경력·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표 9-①-1)

▷ (표 9-①-1) 내부감사기구 구성

구성			감사업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비고
직책	구분	성명		
감사	-	이영제	한남대학교 경영학 박사 (2007) KDB산업은행 컨설팅실 실장 (2015~2017) KDB산업은행 영업기획부 전문위원 (2018~2019)	2022.03.31 임기만료
감사	-	정태환	경희대 경영학 학사 (1992) 감사원 감사관 (2010) 정책금융공사 감사실 팀장 (2010~2013) KDB산업은행 검사부 부장 (2018~2021) KDB산업은행 인사부 전문위원 (2021~2022)	2022.03.31 선임
※ 기타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ii)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후보자 선정 요건, 상근감사의 겸직 허용 여부 등)

#### 나. 내부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 제40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감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상법 제410조 및 정관 제36조에 따라 취임 후 3년 내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 정관 제37조에서 감사의 직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시 업무 등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의 수나 선임 및 임기에 대해서는 정관 제35조와 제36조에 명시하고 있으나, 겸직허용 등의 정책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 제 35 조, 36 조, 37 조>

##### 제 35 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하며,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6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제37조(감사의 직무 및 권한)**

-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당사는 감사가 회사의 내부통제 및 재무보고에 대한 전반적인 감독업무 등 적법하고 효과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내·외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수행에 외부

의 자문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예정입니다. 공시기간 내 실시한 교육내역은 아래 표에 기재하였습니다.

교육일자	교육실시주체	주요 교육내용
2021.08.02	재경팀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주요 변화 사항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정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재경팀에서 감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일 기준 재경팀 내 감사 지원조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팀)명	직원수(명)	직위(근속연수)	주요 활동내역
재경팀	3	부장(24년 5개월) 부장(5년 8개월) 과장(2년 03개월)	- 감사 직무수행 지원 - 이사회 운영 및 안건 검토자료 제공 - 경영활동 현황파악 관련 자료제공

당사의 감사는 관련법령 및 정관에 따라 권한·책임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은 회계감사를 위해서는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서류 및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설치한 내부회계관리제

도의 운영실태를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검토합니다. 또한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기타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사로부터 주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고 중요한 업무에 관한 회사의 보고에 대해 추가검토 및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i) 내부감사기구의 운영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등을 규율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ii)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현황(공시대상기간중 교육시간, 교육내용, 내부회계관리규정상 교육계획 이행여부 등) 및 외부 전문가 자문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단순한 서면, 책자 등 자료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제공은 제외하며 대면 또는 화상 교육의 경우만 인정

(iii)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관련 절차 및 경영진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정보·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iv) 내부감사기구 지원 조직 설치 현황(조직,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책임자 직급, 인원, 역할, 구성원의 전문성,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보고 체계 등)

(v) 기업이 보유한 경영 및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접근성 정도

**다. 감사위원 또는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당사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감사의 보수는 사외이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별도의 안건으로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별도의 보수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감사의 법적 책임에 상응하고 충실한 직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i) 보수정책\* 운영 현황, 감사위원 또는 감사가 아닌 사외이사 대비 보수 비율 등

\*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와 구별하여 보수내용이나 보수총액 등이 다른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보수정책을 의미함

**라.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 향후 감사위원회 설치 계획이 있는지 여부(관련 계획 포함) 및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사유를 설명한다.**

당사는 상법상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아니며 현재 감사위원회 설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상기 기재한 바와 같이, 당사의 감사는 상법에서 정하는 재무, 회계 전문가이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업무에 투입할 수 있으며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감사의 업무 등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해당 내용의 보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9-②)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의 정기적 회의개최 현황 등 활동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아래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자와 외부감사인의 재무보고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결과, 매분기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검토(감사) 결과,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적정성,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사회 등에서의 감사의 활동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당사는 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2021년 활동내역 (감사 이영제, 출석률 100%)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감사
			여부	이영제
2021-01	2021-01-12	(1) 차입금 조달의 건	가결	찬성
		(2) 이수건설(주) 사모사채 보증 입보의 건	가결	찬성
2021-02	2021-01-14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회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1-03	2021-01-22	이수건설(주)의 제 95 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1-04	2021-01-26	이수건설(주)의 제 96 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감사
			여부	이영제
2021-05	2021-02-10	(1)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2) 이수건설(주)의 제 97 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2021-06	2021-02-17	이수건설(주)의 제 98 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1-07	2021-02-25	(1) 이수건설(주)의 제 99 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2) 이수건설(주)의 제 100 회 사모사채 연대보증의 건 (3) 제 53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1-08	2021-03-02	(주)이수액사캠의 산업운영자금대출 대환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1-09	2021-03-09	(1) 2021 년 경영계획 및 종합예산 편성의 건 (2)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연대보증) (3) 베트남사무소 폐쇄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1-10	2021-03-11	(1) 제 53 기 별도 및 연결 결산 재무제표(안) 내부 승인의 건 (2) 제 53 기 배당금 지급에 관한 건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4)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5) 이수건설(주) 유상증자 참여의 건	가결 가결 - - 가결	찬성 찬성 - - 찬성
2021-11	2021-03-18	(1) 제 53 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2) Great Orient Chemical(Taicang) Co., Ltd 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3) 기존 차입금 대환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1-12	2021-05-10	(1) (주)이수앱지스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의 건 (2) (주)이수앱지스 전환사채 전환 청구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2021-13	2021-06-18	제 58 회 무보증 사모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2021-14	2021-06-28	(주)이수앱지스 전환사채 콜옵션 취득의 건	가결	찬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감사
			여부	이영제
2021-15	2021-07-14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1-16	2021-07-27	(1) 단기차입금 대환의 건 (2) 대출약정 및 사모사채 지급보증의 건 (합성 2 구역 대여채권 담보대출)	가결 가결	찬성 찬성
2021-17	2021-08-13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1-18	2021-09-15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1-19	2021-10-14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1-20	2021-10-22	(1) 수출성장자금대출 조달의 건 (2) 이수건설(주) 운영자금 차입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가결	찬성 찬성
2021-21	2021-10-28	차입금 조달의 건	가결	찬성
2021-22	2021-11-29	(1) Great Orient Chemical (Taicang) Co., Ltd.에 대한 연대보증 (2) 그레이스에셋 차입에 대한 신용보강 승인의 건 (3) 그레이스에셋유한회사 보유 이수건설(주) 전환상환우선주에 대한 콜옵선약정 해지합의서 체결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1-23	2021-12-28	하나은행 차입한도 약정의 건	가결	찬성

- 2022년 활동내역 (감사 이영제, 출석률 100%)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감사
			여부	이영제
2022-01	2022-01-14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감사
			여부	이영제
2022-02	2022-02-11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2-03	2022-02-25	(1)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2) 제 54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3) (주)이수엑사켄의 산업운영자금대출 대환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가결 가결	찬성 찬성 찬성
2022-04	2022-03-11	이수건설(주) 관련 유동화증권 원리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2-05	2022-03-15	제 53 기 K-IFRS 적용 재무제표 재승인의 건	가결	찬성
2022-06	2022-03-16	(1) 2022 년 경영계획 및 종합예산 편성의 건 (2) 제 54 기(2021.01.01~2021.12.31) 별도 및 연결 결산 재무제표(안) 내부 승인의 건 (3) 제 54 기 배당금 지급의 건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5)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6) Great Orient Chemical (Taicang) Co., Ltd.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가결 가결 - - 가결	찬성 찬성 찬성 - - 찬성
2022-07	2022-03-23	제 54 기(2021.1.1~ 2021.12.31) K-IFRS 적용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가결	찬성

- 2022년 활동내역 (감사 정태환, 출석률 100%)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감사
			여부	정태환
2022-08	2022-04-14	이수건설 매입채무리밸런싱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2022-09	2022-04-20	신장이수롱쿤농업개발유한공사에 대한 연대보증의 건	가결	찬성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감사
			여부	정태환
2022-10	2022-05-04	쿼드 COLABO Op.2 창업벤처전문 일반 사모투자신탁(가칭) 출자의 건	가결	찬성
2022-11	2022-05-26	기존 차입금 한도 증액의 건	가결	찬성

(i)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내부감사기구의 감사활동, 외부감사인 선임 내역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등 실시 내역

(ii) (감사위원회를 둔 경우) 공시대상기간 연도 개시시점부터 공시서류제출일 현재까지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 내역, 개별이사 출석내역 및 최근 3개 사업 연도별 개별이사의 출석률 등

\*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 (서면보고 제외)

(iii) 감사절차, 회의록·감사록의 기록·보존, 주주총회 보고절차 등과 관련한 내부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가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당사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부속 명세서를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그 밖의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감사를 위하여 이사회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로부터 영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중요한 업무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대표이사와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를 평가였고, 감사의 감사결과 및 내부회계운영실태 평가결과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주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인의 구체적인 업무절차 등에 대해서 향후 규정을 제정하여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10) 외부감사인

##### (핵심원칙 10) 외부감사인

-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세부원칙 10-①)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가. 외부감사인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정책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회사 외부감사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감사자원 투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수, 시간, 투입인력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문서화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고려사항으로 자산1조 원 이상 회사에 대한 감사경험, 산업관련 감사경험, 품질관리전담자 수, 독립성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부감사인후보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조치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삼화회계법인을 2021사업연도(제54기)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조치 결과로 舊「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2021.01.01~2021.12.31)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2022사업연도부터는 당사의 지정사유가 해제됨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통하여 2022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외부감사를 수행할 차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르면, 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2022년 2월11일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삼정회계법인을 차기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본 선임 관련하여 구성한 감사인선임위원회 명단 및 실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인선임위원회 명단

구분	자격	성 명 (회사명)	참석 여부
위원장	사외이사	허 건 수	○
위원	감사	이 영 제	○
	주주	NH-Amundi 자산운용	X
		국민연금	X



구분	자격	성 명 (회사명)	참석 여부
	채권금융기관	박 종 만 (KDB 산업은행)	○
	외부전문가	고 병 현 (중앙회계법인)	○
합 계		6 명	4 명

(\*) 보고서 제출일 현재 이영제 감사는 2022년 3월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으며, 정태환 감사가 제54기 정기 주주총회를 통하여 차기 상근감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횟수는 1회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최일: 2022.02.11(금)
- 안건: (1호) 감사인 선임 준수사항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감사보수: 최소 397백만원,

투입시간: 최소3,647시간,

감사인력: 최소 5명

- (2호)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

삼정회계법인 (단수후보)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시점에는 2021사업연도를 감사한 삼화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발행이 완료되지 않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22사업연도 중 전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제공받는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은 없습니다.

- (i)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임 관련 기준·절차
- (ii) (감사위원회 대신 감사를 둔 경우) 감사인선임위원회 설치 현황(위원 명단, 위원 독립성·전문성에 대한 평가결과 등)
- (iii)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회의\* 개최 횟수 및 각 회의에서의 논의사항(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평가, 감사계획, 감사시간 등)

\*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서면보고 제외)

(iv) 외부감사 종료 후 외부감사인이 감사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등에 대한 평가여부 및 그 내용 (외부감사 담당 이사의 참여도가 높은지,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지 등)

(v) 외부감사인의 자회사를 통해 경영자문 등 비감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지 여부.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선정 사유 및 관련 비용 지급 내역(감사 비용 및 비감사 자문용역 금액)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외부감사인이 선임된 경우 지정 사유를 상세하게 기술한다.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당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규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부감사인 선임시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충분한 내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향후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인의 업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세부원칙 10-②)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 실태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당사의 감사는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1사업연도 외부감사 관련하여 감사와 외부감사인간 주요 사항에 대한 논의는 총 3회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초도 감사에 따른 입증감사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으로, 2022사업연도 외부감사 관련하여는 분기별 최소 1회의 이상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협의 관련하여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사 감사가 외부감사와 협의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1	2021.10.29	감사 1 인, 회사임직원 2 인 업무수행이사 외 2 명	대면회의	기초잔액 감사 수행 시 유의적 발견사항, 전기 재무제표 재발행 논의

구분	일자	참석자	방식	주요 논의 내용
				핵심감사사항 등 기말감사계획 독립성 및 품질관리 절차
2	2022.03.02	감사 1 인, 회사임직원 3 인 업무수행이사 외 2 명	대면회의	기말감사 관련 유의적 발견사항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유 의적 발견사항
3	2022.03.16	감사 1 인, 회사임직원 3 인 업무수행이사 외 2 명	서면보고	재무제표 감사결과 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결과 보 고

(\*) 참석자 중 회사임직원은 재경팀의 회계업무 담당자이며, 논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배석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인 감사 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나 이에 해당하는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책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 전, 연결기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 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상세 제출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자	제출서류	외부감사인
1	2021.01.26	제 53 기 감사 전 재무제표	선진회계법인
2	2021.02.23	제 53 기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선진회계법인
3	2022.01.24	제 54 기 감사 전 재무제표	삼화회계법인
4	2022.02.07	제 54 기 감사 전 연결재무제표	삼화회계법인

(i) 경영진 참석 없이 분기별 1회 이상 외부감사 관련 주요 사항을 협의\*하는지 여부

\* 대면 또는 화상 회의만 해당(서면보고 제외)

(ii) 주요 협의 내용(연간 감사계획,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경영 전반에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치평가 방법 등) 및 내부감사업무에의 반영 절차 (필요시 관련 실적 기재)

(iii) 외부감사인이 감사중에 발견한 중요사항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는 절차 및 이와 관련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및 책임

(iv)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6주전에, 연결기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정기주주총회 4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외부감사인명 및 제출 시기

**나. 상기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주기적 의사소통이 부족한 경우 (회의 빈도가 분기별 1회 미만인 경우 등)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한다.**

당사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은 감사업무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도 감사에 따른 입증감사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시기간 내에는 분기 1회의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으나, 향후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주기적인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 기타 주요 사항

□ (첨부) 기업지배구조 공시 내용과 관련된 기업 내부 규정을 첨부한다.

- 이수화학 정관 (22.03.31 개정)
- 이수화학 2022 기업지배구조헌장
- 이사회규정
- 공시정보관리규정
- Risk 관리규정
- 내부회계관리규정

(i) 정관, 기업지배구조 헌장, 이사회 운영규정, 윤리강령 등

(ii) 감사위원회 규정, 보상위원회 규정 등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등

첨부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필수 기재)					
구분	핵심지표	(공시대상 기간) 준수여부		준수여부 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상세 설명 <sup>1)</sup>	(직전 공시대 상기간) <sup>2)</sup> 준수 여부		비고
		○	X		○	X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15일전 소집공고	-	-	
	② 전자투표 실시*	●		제54회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 실시	-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집중일에 개최	-	-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주주에게 통지**	●		사업보고서, 전자공시시스템에 해당 내용 기재	-	-	연내 홈페이지에 배당정책 게시 예정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해당 정책 없음	-	-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리스크관리규정, 내부회계규정, 공시정보규정 마련 및 운영. 준법경영관련 정책 없음	-	-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	미분리	-	-	
	⑧ 집중투표제 채택		●	미채택	-	-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미수립	-	-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		해당없음	-	-	
감사 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		2021.08. 내부교육 실시.	-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독립적인 부서는 없고 재경팀에서 업무지원	-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현재 감사인 관련법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에 해당	-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공시기간 내 분기 1회 미만 개최	-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	별도의 명문화된 절차 없음	-	-	

● 작성 기준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1) 필요시 별도 페이지에 상세설명 기재 가능

2)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최초로 공시하는 기업의 경우 '-'으로 기재